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적용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, 양양군, 인제군

내 용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,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

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

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·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,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,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으며

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

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.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
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

③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

④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

「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제15조에 따르면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(보건직렬-조산사, 간호사, 지적분야 / 시설직렬-지적기술사, 지적산업기사, 지적기사)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강원도에서는 보건직렬과 시설직렬 채용 시 자격증 제한으로 채용된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 등 3명과 자격증 특채로 채용된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시 자격증 가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[표 1]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 결과 2015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가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
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읍)	89.36	60.70	28.16	-	0.50 (사회복지)	88.86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과)	86.62	66.80	19.32	-	0.50 (사회복지)	86.12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과)	82.42	62.60	19.32	-	0.50 (사회복지)	81.92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면)	93.96	70.00	23.46	-	0.50 (사회복지)	93.46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과)	81.16	66.40	14.26	-	0.50 (사회복지)	80.66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과)	77.96	63.20	14.26	-	0.50 (사회복지)	77.46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○과)	77.56	62.80	14.26	-	0.50 (사회복지)	77.06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과)	72.46	57.70	14.26	-	0.50 (사회복지)	71.96	자격증 제한

[표 3] 양양군 2015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 변경 명세

직급	성명	당초					변경	비고
		총 평정점수	근무성적	경력	실적 가산점	가산점 (자격증)	총 평정점수	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읍)	79.45	62.50	16.45	-	0.5 (사회복지)	78.95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○○ 과)	65.12	52.40	12.22	-	0.50 (사회복지)	64.62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○○○○ 과)	63.09	56.95	5.64	-	0.50 (사회복지)	62.59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읍)	57.54	51.40	5.64	-	0.50 (사회복지)	57.04	자격증 제한
지방○○○ ○○○	○○○ (○○면)	56.64	50.40	5.64	-	0.50 (사회복지)	56.14	자격증 제한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, 양양군수, 인제군수는

앞으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직렬에 임용된 경우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